

수원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4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4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198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방호, 한정이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1987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00,308,2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를 포함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7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중소기업은행이 2022.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경기도 화성시 G 도로 366㎡ 중 B 소유

366분의 221 지분 및 H 도로 17㎡ 중 B 소유 17분의 3.4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U)에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3. 1. 23. 매각대금 중 277,608,190원을 배당요구권자(채당금) 근로복지공단(배당순위 1순위)에, 5,309,425,105원(= 2,189,425,105원 + 3,12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채권양수인 V유한회사(배당순위 2순위)에, 300,308,289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3순위)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4. 1. 2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729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13’ 다음에 『, 19, 20』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하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하는 한도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한도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①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③ 수익자인 피고가 받은 이익 중 적은 액수에 해당한다. 원고가 B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2,066,486,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300,308,28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인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이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인 300,308,289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인 피고가 받은 이익 중 적은 액수는 피고가 받은 이익인 300,308,289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300,308,2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에서조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앞서 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을 알았다면 수익자로서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의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경영 방침을 변경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익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은 2021. 12. 28.로서 E이 경영권을 승계한 시점인 2020. 11. 7. 무렵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반면 피고가 K회사 L으로부터 기계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때는 2020. 12. 16.으로 E이 피고의 경영권을 승계한 무렵과 시간적으로 가깝다), ④ 피고는 B에 대한 미수금 채권 액수는 월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B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2021. 1.부터 2021. 11.까지 약 5억 원이 증가(이는 약 34%의 증가에 해당한다)한 점(피고는 B에 별다른 부실징후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미수금 채권의 증가 자체가 하나의 부실징후가 된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300,308,289원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데다가, 만약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도 없을 것인 점, ⑥ 피고는 B이 부도에 이른 것이 원청업체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에 알았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⑦ 피고는 2021. 4.경부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B의 부도를 예상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1. 4.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이에는 약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 피고의 B의 재무 상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출채권보험은 B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관리를 위하여 가입하였었다는 것이므로, 매출채권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결정이 오직 B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도 B에 평소와 같이 자재를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B에 납품한 자재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수익자가 사해행위 이후에도 채무자와 정상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7, 34호증의 일부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B에 대한 신용보증 당시 B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였으며, 공적 기관으로서 B의 재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신용 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B에 대한 신용보증을 한 뒤, 그 부도에 따른 위험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신용보증기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B의 재정 악화에 따른 위험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이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 목적으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을 제공한 기업의 부도 위험을 모두 감당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강은주, 판사 김건우